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동의학원 (동의과학대학교)의 2022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동의학원 (동의과학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동의학원 (동의과학대학교)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3 년 04 월 20 일

학교법인 동의학원

감사 : 강 필 수 (인)

감사 : 김 진 경 (인)

피감사자(임회인)

직명 : 사무처장

성명 : 심 성 용 (인)

[별지 제3호 서식]

동의과학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2회계연도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(등록금회계, 비등록금회계)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1.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비회계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.	1. 지적사항은 없습니다.
피감사기관장	동의과학대학교 총장 김영도 직인 (사인)